

Yeosu Web Contents

2024년 04월 30일 01시 07분



목차

목차	2
공지사항	3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현황	3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현황

2016.05.09 조회수 234 등록자 관리자

재해를 입은 이재민과 재해가 예상되는 일시대피자에게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보호와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재해구호법 제4조에 2항에 의거 임시주거시설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재해시에 대비 바랍니다.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현황(2016 상반기).hwp (21695 hit/ 80.0 KB) ↓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2011년 상반기 기초생활보장사업기금 대어 계획

다음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현황

Yeosu Web Contents

